

의안 번호	2476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】</p>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검 토 보 고 서</h1>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5. 10. 2.(목)
- 제출자 : 문기호 의원 외 6명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0. 2.(목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0. 16.(목)

2. 제안이유

- 노인인구가 급증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재사회화와 디지털기기 교육 등 노인들이 사회적응 및 대처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(안 제1~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노인교육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노인교육 사업, 사무의 위탁,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~7조)
-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8~9조)

4. 근거법규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5조

5. 검토의견

- 사회가 빠르게 산업화, 정보화되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 되면서 노인들의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게 됨
-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학력보완교육, 직업능력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디지털생활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
- 특히, 우리사회가 휴대전화, 무인단말기 등을 이용한 무인·자동화를 통해 급격한 디지털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노인이 디지털 기기 이용이나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노인교육 대상에 포함 시킴
- 본 조례가 시행되면 노인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가 구체화되고, 관련 사업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
- 상위법인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에 걸쳐 평생교육 기회 제공과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을 위한 시책 추진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근 거 법 규

「노인복지법」

-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- 제15조(평생교육과 정보화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,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·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,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